

# 2011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(안)

제출년월일 : 2012. 6. .

의안 번호	170
----------	-----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373,545천원으로써, 이중 15건에 1,342,667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계(15건)	1,342,667천원
○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	441,667천원
○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생계안정자금 지원	53,105천원
○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	165,000천원
○ '11. 2.11~14일 대설피해 및 기습한파 상수도시설 피해복구	266,250천원
○ '11. 2.27일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복구	18,000천원
○ 구제역 발생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	189,326천원
○ 구제역관련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	6,778천원
○ 구제역 차단방역 기자재 지원	24,451천원
○ '11. 7. 3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시설복구	137,500천원
○ '11. 7. 26~29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	5,000천원
○ 오대벼 종자피해농가 지원	12,083천원
○ 구제역 고용·산재보험료 정산분 납부	5,057천원
○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료(온실)	5,000천원
○ 공예전시체험관 상수도 누수공사	3,000천원
○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(생활민원기동처리반)	10,450천원 임.

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9조
-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□ 지방자치법 제129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 제43조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